**신탁회사(신탁재산) 확약서**

유안타제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,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규정)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, 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. 또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, 동 요건이 수요예측 배정 시점까지 유지될 것을 확약합니다. 다만,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신탁회사 수요예측 참여조건** | **충족 여부** |
| 1.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
 | * 충족
 |
| 1.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| * 충족
 |
| 1.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가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가 아닐 것
 | * 충족
 |
| 1.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
 | * 충족

계약 체결일 : 20XX. XX. XX일평균(3개월) 평가액 : XX 억원 |

※ 수요예측 참여시점 현재 기준

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. . .

수요예측 참여기관

대표이사 (인)